

『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추가(안 제5조의2)
- 행정서식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및 신설 (안 별지 제11, 12, 13조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7조
-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
-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-602호(2012.2.28)
- 경상북도 세정과-3089호 (2012.3.6)로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 안내 통보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표준지방세 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위·변조를 방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 5조의2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,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